

# NEWSLETTER 1013

July 02, 2024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46호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는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허용지역 구분 등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림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개정이유

-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개정(‘23.11.2)에 따라,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에 그간 수입 금지되었던 5개국(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를 포함하여 별도로 수입허용지역 구분
-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주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개정(‘24.5.22)에 따라, 영국을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의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
- 호주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4.5.23)함에 따라, 호주를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의 가금류, 타조류, 가금육, 식용란 수입허용지역에서 삭제

### II. 주요내용

#### 1. 가금류 대상 구분 및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의 1. 동물, 다.)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를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로 수정**
-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

구 분	수입금지 지역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미국·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영국 이외의 지역

2.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구분 신설 ([별표]의 1. 동물, 라, 마.)

-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신설하고 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 18개국을 수입허용지역으로 개시

구 분	수입금지 지역
라.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캐나다·영국·일본·필리핀·대만 이외의 지역

3. 타조류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의 "1. 동물, 마.)

- [별표]의 "1. 동물, 라. 타조류"를 "마. 타조류"로 자구(순서) 수정
-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구 분	수입금지 지역
마.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미국·덴마크 이외의 지역

4.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마.)

-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

구 분	수입금지 지역
마. 가금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태국·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스웨덴·덴마크·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칠레·아르헨티나·영국 이외의 지역</li> <li>□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아르헨티나 이외의 지역</li> </ul>

5. 식용란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

구 분	수입금지 지역
사. 식용란	뉴질랜드·태국·미국·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영국 이외의 지역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개정 전문(제2024-46호)

## | Contact



양다윤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2-6011-3051  
E dyyang@esein.co.kr



김재우 관세사 / Senior

T 070-4353-1522  
E jw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